

합니다.

○産業經濟局長 金禹奭 産業經濟局長 金禹奭입니다. 이 上程된 改正條例案은 앞서 서울特別市立 靑少年職業訓練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꼭 같은 內容입니다. 다만, 왜 분리해서 條例가 되어 있느냐 하면, 靑少年職業訓練院은 市가 直營하는 訓練院이고,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 및 委託 運營에 關한 條例가 適用되는 對象은 서울市가 民間에 委託해서 運營하고 있는 4個 職業訓練機關이기 때문에 條例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提案說明은 앞서 서울特別市立靑少年職業訓練院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省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다음은 李贊穆 專門委員님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

(報告)

199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이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의4에 의하여 개정('93.12.27.)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는 4개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종합직업전문학교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

○서울특별시립 상계직업훈련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상계직업전문학교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19호)

○서울특별시립 엘림직업훈련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로(조례안 제2조제22호)명칭을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3. 관계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의4.

4. 검토의견

○본 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4개 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의4에 의하여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하는 4개의 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좀더 친근감을 갖게하고 직업 청소년들에게는 전문학교라는 인식을 갖게하여 면학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기술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종합직업훈련원과,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의 명칭 개정에서 “서울특별시립”으로 변경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심의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훈련원”은 인적·물적 관리와 운영을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직업훈련원은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립”으로 동일하게 한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 운영과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烈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烈委員 李基烈委員입니다.

방금 저도 안 그래도 서울特別市立靑少年職業訓練院을 職業專門學校로 하는 問題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습니다만 마침 專門委員이 指摘을 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이 指摘한 대로 서울特別市立靑少年職業訓練院은 市에서